##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5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천준호·박홍배·민병덕

한민수ㆍ허 영ㆍ한준호

박홍근 · 김교흥 · 김영배

박상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우리 주 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회사에처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주주는 회사와 달리 이사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는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

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법률 제 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과 충실의무)

- ①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와
<u>&lt;신 설&gt;</u>	충실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u>한다.</u>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u>에 따라 회사를</u> <u>직</u>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u>무를 충실하게</u>
<u>&lt;신 설&gt;</u>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
	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u>&lt;신 설&gt;</u>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
	<u>할 수 있다.</u>